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불법행위 제재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목 차]

요약문	2
1. 사실관계	5
2. 쟁점	6
3. 의견	
가.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	6
나. 다른 법상 업무정지와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례	35
다. 대안2의 특허법위반 외에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를 등록취소 내지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입법하는 경우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39
라. 특허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제재규정의 위치	45
마. 부칙규정에 현재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하기 위한 소급규정을 두는 것의 불가능성	46
바. 결격사유 등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	48
4. 특허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50
가. 특허법 개정안 해설	50
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해설	54
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안 해설	56

요 약 문

□ 법개정의 배경

- 특허법상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스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함)으로 인해서 전문기관 및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가 있었음.
- 이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전문기관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제재로서의 등록취소 등 특허청의 제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법률유보) 이를 통해서 헌법상 요구되는 제재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재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개정안의 내용

- 본 의견서에서는 특허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위계에 따라 필요한 특허청의 법개정안을 제안함
- 특허법 개정의 주요내용
 -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업(業)법과 자격사법을 비교분석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의 각종 법리와 판례를 고려하여 법개정안을 도출하였음.
 - 그 결과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취소 등의 제재사유로 규정한 뒤 그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식을 택함.
 - 개정안에서는 이번 대상사건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및 그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음.
 - * 사전에 전문기관으로 등록받으려고 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기관의 등록이 불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결격사유가 가능함.
 - * 전문기관 등록이후에 사후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위법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위임하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 특허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
 -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허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대상법률

을 규정하였음.

- 이를 정함에 있어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기본으로 고려하였음.
- *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위반행위와 제재간의 결연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임.
- * 예를 들어 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전문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당해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와 제재간의 결연관계가 희박한 경우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대상법률로 당해 법률은 특허법 위반, 그리고 관련 법률인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법 위반, 관련 업(業)법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위반을 제재 대상이 되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은 개정을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닌 특허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거나 기존 법률을 삭제하는 경우 특허법을 매번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는 입법의 효율성 및 효과성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음.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등록취소부터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 헌법상 제재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에 부합하도록 정하고자 하였음.
- 특허청에서 시행규칙 별표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기준을 분명히하고 제재대상 전문기관의 입장에서는 제재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특허법 개정안 발의시 입법취지 예시>

입법의 배경

특허법상 특허청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기관 및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

재가 있어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제재로서의 등록취소 등 특허청의 제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법률유보) 이를 통해서 헌법상 요구되는 제재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재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업(業)법과 자격사법을 비교분석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특허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취소 등의 제재사유로 규정한 뒤 그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나. 개정안에서는 이번 대상사건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및 그 임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였다.

다. 전문기관 등록이후에 사후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위법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1. 사실관계

- A업체는 민간 의뢰로 수행한 산업재산권 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침해자료 조사가 非변호사의 감정 사무 수행이라며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변리사회가 고발하여(2020.11), 검찰 기소(2021.12), 23. 1.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 특허법 제58조 제1항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 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특허심사 중 일부인 선행기술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법인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 등록을 하여야 하며(「특허법」 제58조 제2항,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2)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안정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요건을 특허법에 명시하였다(「특허법」 제58조의 2).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던 A업체는 특허청 관련 수행업자가 아닌 민간에서 수행한 감정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 위와 관련,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양금희 의원실 질의(“유사 불법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 등록취소 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 적발 시 기관 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데 대한 입장은?”)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 의뢰 등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향후 확정판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다. 즉 2022년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전문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처분 규정을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처분규정의 신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본 의견서에서는 청 사업수행 기관의 직무 관련 위법행위 시 제재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쟁점

- 특허법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각호 및/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별표 개정안 도출

3. 의견

가.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

- 특허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 개정안 도출하여 현행법 위반 시 특허청 업무의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 특허법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각호 및/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별표 등 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헌법 제37조¹⁾ 및 헌법상 비례 원칙과 행정기본법²⁾상 부당결부금지 원칙 및 제재처분의 기준 등을 고려하면서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공적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경우 전문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1)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반드시 행정기본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판례상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종래에도 인정되어 왔으나 확인적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이런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 고에서는 행정기본법과 판례상의 부당결부원칙을 종합적으로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고 한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 달성에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 달성에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규정을 도입하되 과잉금지의 원칙 고려하여 위헌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반 법령 및 행위, 처분 요건, 처분 정도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및 침해의 최소성 담보하도록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처분 대상을 단순히 ‘직무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위헌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다른 법상 업무정지와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례

1) [그룹 1: 업(業)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지정, 지정취소, 결격 등의 규정체제가 지금 대상이 되는 사안과 가장 근접한 참고가 되는 법제라고 판단된다.

방위사업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가지 형태로 지정 내지 등록, 지정 취소 내지 등록취소, 그리고 결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위사업법은 ①방산업체의 지정, ② 지정방산업체의 지정취소, 그리고 ③신청시 결격사유의 판단의 구조로 되어 있어 특허법 개정입법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참고로 등록업 형태를 취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에 대한 규율도 있어 이는 등록형태의 업체의 경우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판단에 도움이 된다.

조문	시사점
제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파악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 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방산업체의 매매·경매 또는 인수·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20. 2. 4.>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	

용자를 받거나 용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	--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³⁾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1)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등)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의 등록과 관련된 제1항 단서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에 있어서 결격사유인데, 이는 특허법의 경우와 구별된다. 왜냐하면 방위사업법을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특허법상 등록의 대상은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당해 전문기관의 결격은 통상적으로 자본금 요건이나 인력요건과 같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제한이나 형식에 있어서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이를 바로 참고할 수는 없다.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58조의2(전문기관의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6. 12. 2.,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본조신설 2016. 5. 29.]	12. 2.>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2) [그룹 1: 업(業)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도 참고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제21조 제1항), 지정취소를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경우는 지정과 취소를 하나의 조문안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방위사업법과 달리 조문을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사점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사점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정취소 외에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법 개정에 있어서 등록취소 외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근거를 둬으로써 위반되는 법의 내용에 따라서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 3)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등록기관의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만일 결정사유를 규정한다면 이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다.
4) 서류 거짓작성, 공무원 지도감독방해, 비치서류 보존하지 않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경우 등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⁴⁾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3) [그룹 1: 업(業)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두고 있다. 이 업자의 경우에도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등록, 결정, 등록 취소**의 3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허법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사점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제105조 규정은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0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자로 밝혀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특허법에서의 결격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참고가 된다고 본다. 본 조는 다른 법령대비 다수의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은 정말 많은 법적 분쟁이 생기는 법으로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법제라는 점에서 등록취소에 대해서는 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	---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규정하여 해당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당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 대상 사안의 경우와 같이 특허법을 근거로 등록된 기관이 특허법이 아닌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하여 등록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비교의 실익이 있다. 이 쟁점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다.
--	--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

4) [그룹 1: 업(業)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⁵⁾ 이 중 다단계판매업이 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중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5)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런 다단계판매업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등록(제13조), 결격, 등록취소(제49조 제5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방문판매법	시사점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법이 다른 그룹 1 형태의 등록업자에 대해 제제로서의 등록취소와 구별되는 점이 2가지 있다.
1.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첫째, 방문판매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입법들과 마찬가지로 제제로서의 시정조치의 일종으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정조치의 하나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둘째는 금지행위 ⁶⁾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법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공정위의 소관법령이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공정위의 소관법령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자주 보이는 방식이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4. 20.>	이 금지행위 위반을 기초로 해서 등록취소를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으며 특허법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규율을 해서 법령(변호사법) 위반을 하지 않아야 다고 규정을 두고(금지규정의 신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23. 7.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	--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1. 4. 20.>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조의2,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특수판매업자가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열람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营业을 하는 경우	
--	--

- 6)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요컨대, 방문판매법 제49조 제5항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로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②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나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을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 [그룹 2: 자격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도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록거부제도⁷⁾가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 이 점은 대상 사안의 해결과 관련된 입법에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

- 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7)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 5. 20.>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다. 관련되는 조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시사점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조의 자격이 있으면 7조의 등록신청을 하고 결격이 없으면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다.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사후적으로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취소가 되도록 해서 결격사유와 등록취소가 연계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사건 특허법 개정의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범위반 사실이 없을 것을 두고, 범위반 사실이 사후적으로 생기면 등록취소사유로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	--

6) [그룹 2: 자격사법] 변리사법

변리사법도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2011년 법개정에서 등록 거부 제도⁸⁾가 도입되었다. 이 점은 대상 사안의 해결과 관련된 입법에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되는 조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변리사법	시사점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조의 자격이 있으면 7조의 등록신청을 하고 결격이 없으면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다.

8)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삭제 <2016. 1. 27.>
2. 삭제 <2016. 1. 27.>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 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변리사법도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두고 사후적으로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취소가 되도록 해서 결격사유와 등록취소가 연계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사건 특허법 개정의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범위한 사실이 없을 것을 두고, 범위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생기면 등록취소사유로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7) [그룹 2: 자격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사점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결격사유와 등록 결격사유로 2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2개 존재한다. 기소가 되었다는 점만을 들어서 등록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와 같은 경우가 등록결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5호는 개정되어 2023. 10. 19. 부터는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결격이 되는 기간이 연장되었다.
--	---

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6. 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2020. 6. 9.>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등록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데 자격 취소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증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0. 12. 29.>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업을 한 경우	반 행위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등록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요컨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대해서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8) 검토의견

○ 이러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입법례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요건을 이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으로 규정하였고, 법인의 임직원이나 지배주주 등이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허법 이외의 법령에서 해당 법 위반한 경우 처분하고 있으나, 위반 법령 종류에 무관하게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 등록취소하는 입법례(공인중개사법)가 있다. 그런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법제도 있어 이 법제들도 참고하였다.

- 업법의 경우 등록취소 사유의 비교

1) 등록취소를 기속행위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방위사업법은 제57조의3 제1항 제1호의 등록취소사유는 기속행위(등록취소하여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재량을 남겨두고 있다.

도정법의 경우에도 제106조 제1항 단서에서 “제1호·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기속행위로 규정한다.

방위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정법	방문판매법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제49조(시정조치 등)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	--	--

- 자격사범의 경우 등록취소 사유의 비교

공인중개사법 제38조는 제1항은 등록취소사유 중 기속행위(등록취소하여야 하는 행위)

를, 제2항은 재량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특이점이 있으며 등록취소사유도 많다.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은 모두 결격과 등록취소사유를 연계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모두 사망과 같은 사유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룹2가 자격사법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점이다.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중개사법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종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

		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0. 12. 29.>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	---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	---

○ 현행법 위반 시 특허청 업무의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은 가능하지

만 이와 같이 제재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경우 위반 법률·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 1과 대안 2를 나누어서 설명한다. 다만 국회의 요구는 대안 2에 대한 것이어서 대안 2로 갈 경우의 문제는 별도의 항에서 설명한다.

[대안1] 특허법위반의 경우를 등록취소 내지 업무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입법하는 방안

이러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허법의 경우도 ‘이 법(특허법)을 위반하여 **예를 들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경우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이 정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 법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뒤에서 살펴볼 부당결부금지원칙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적은 방법이다.

[대안2] 특허법위반 외에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를 등록취소 내지 업무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입법하는 방안

타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 위반행위로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과 같이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는데 특허법의 경우에도 특허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수뢰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한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이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로 위반의 사안과 경중에 따라서 등록취소 내지 업무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입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는 침익적 행정제재로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전문기관이 예측가능할 정도로 자세하게 법 위반의 종류를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과잉금지원칙이나 법률유보 원칙위반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명확성의 요

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해서 필요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직무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등록취소가 가능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렴서약서를 매개로 해서 이를 별지 서식으로 만들어서 규율하고 청렴서약서 위반을 기초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청렴서약서만으로 규정하면 뇌물방지의 의미로 읽힐 수 있으므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준법에 대한 조문을 두거나 **준법 및 청렴서약서**로 해서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법률유보 원칙위반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대안2의 특허법위반 외에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를 등록취소 내지 업무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입법하는 경우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1) 쟁점의 정리

제2안을 취할 경우 예상가능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쟁점 1: 특허법 위반이 아닌 타법(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에 기하여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기관이 특허법에서 정해진 업무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타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특허청 관련 업무의 수행을 제한(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하는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헌법제37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쟁점 2:신설규정의 위치]

쟁점 1에서 전문기관이 특허법에서 정해진 업무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타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특허청 관련 업무의 수행을 제한(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하는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신설하는 위치를 특허법제58조의2에 새로운 호(제4호)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지

[쟁점 3: 신설규정의 소급적용가능성]

처분 규정을 신설한다면, 규정 신설 전에 발생한 타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칙 등을 통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규정 신설 전에 타법 위반 후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규정 신설 전 타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으나 규정 신설 후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처분을 위한 부칙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 1: 특허법 위반이 아닌 타법(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에 기하여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① 특허법 위반이 아닌 타법(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에 기하여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특허법 제58조의2의 입법취지를 본다. 특허법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취소)는 특허청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 등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전문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등록을 받은 경우,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해서 본 조가 동법 상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특허법 제58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배분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업무 및 기술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58조의 입법취지를 본다. 특허법 제58조 제1항은 특허심사 중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와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에 관해서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2 및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전문기관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등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226조의2 제1항은 “제58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별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재대상자인 전문기관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간의 업무정지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요건 하에서 등록취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행정법상 재량준칙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행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즉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그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법 제58조 및 제58조의2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해 전문기관이 준법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허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준법통제(compliance)**를 하지 못해서 법령위반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위반되는 법령의 내용, 특허법상 직무와의 관련성, 법령위반행위의 경중 등의 사정의 경중을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경중을 살펴보도록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인 사정을 감안하도록 한다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비추어볼 때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법에서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해당 업체에 대한 침익적 처분이며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입법이지만, 모든 헌법상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①**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며(목적의 정당성),**

②**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으로서 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반드시 특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중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급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등록취소라는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수단의 적절성)한 것으로 보이며,**

③**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하여야 하는 바(피해의 최소성), 등록취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전문기관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 되어 달리 최소침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하는 바(법익의 균형성),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라는 공익적 요구가 이로 인해서 침해하는 전문기관의 영업의 자유에 비추어 더 크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행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
--

본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수단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요컨대, 특허법 제58조 제1항에서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실체 심사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래 특허 여부의 결정이라는 귀 기관의 공적 업무의 일부를 외부 민간 전문기관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기에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전문기관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이러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만한 직무관련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경우 전문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도입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겠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면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② 등록취소 사유 중에서 기속행위로 해서 본조 위반이 되면 반드시 등록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특허법 위반의 경우와 달리 특허법이 아닌 다른 법령 위반의 경우 위반되는 법령의 내용, 특허법상 직무와의 관련성, 법령위반행위의 경중 등의 사정을 포함한 사정을 특허청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즉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제재대상자인 전문기관이 위반사항이 무엇이며, 위반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는지, 어

떠한 요건 하에 등록취소가 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 바, 등록취소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하고 이 경우에도 ‘등록취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보다 낮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경미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예상가능한 질문 1] 필자의 제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관련해서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제재처분에도 책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2012헌바435 결정도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징계부가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 확정 전이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참여제한, 사업부 환수,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기소만 되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⁹⁾

9)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정 1998. 5. 28. 위헌 현재 1998. 5. 28. 96헌가12, 판례집 10-1)

이런 점에서 필자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등록취소사유로 하는 것이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입법이라고 본 것이다.

[예상가능한 질문 2] 한편 향후 특허청이 재량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¹⁰⁾ 참조).

라. 제재규정의 위치는 특허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할 때 구체적인 사항은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에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여야 위헌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는 제재 전문기관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유보의 원칙상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¹¹⁾

현행 특허법 제58조의 2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58조 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기관의 임직원인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등의 위임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 규정을 신설한다면 특허법제58조의 2에 새로운 호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특허법에 등록취소사유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시

행령에 위임하여 등록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만 새로운 처분 규정을 신설하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부칙규정에 현재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하기 위한 소급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1) 새로운 법령이 과거에 종결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을 법령의 소급적용이라 하는데, 법령의 소급적용에는 법령의 시행 이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과 법령의 시행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이 있다.

판례는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된 경우인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¹²⁾, 법률관계가 아닌 진행중인 경우인 ‘부진정소급’은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건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금지하고 있다.¹³⁾

2)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부진정 소급의 경우 신구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10)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제재처분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교수는 그 돈을 개인적·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 공동관리계좌 운영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1)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87333 판결.

12)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로 재산권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로 본 것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법이다. 대법원은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귀속조항’이라 한다)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위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그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화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1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등 다수.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법령의 개정 시 신법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경과규정을 부칙에 둔다고 하더라도 행위시에 등록취소를 예견할 수 없었을 당사자에게 등록취소와 같은 제재를 소급하여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신법과 구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여 처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¹⁴⁾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시 법령이 행위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사례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⁵⁾

대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의 처분 시 법령이 행위 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사례에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판시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다.¹⁶⁾

3) 사안의 경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의 신설로 규정 신설 전 타법 위반 후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과거 종결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칙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큰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칙 경과 규정을 통한 소급 적

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므로 무리하게 부칙조항에서 소급을 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규정 신설 전 타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으나 규정 신설 후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이익을 이유로 부진정 소급입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보인다.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는 신설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법 발효 이후 발생되는 등록취소사유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행위시법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바. 결격사유 등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

본 사안은 등록당시 등록신청을 하는 자의 결격에 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결격에 대한 규정을 둔다면, 다음과 같이 특허법 제58조의3으로 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도정법 제105조 제1항의 등록 결격사유를 특허법 규정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제58조의3(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1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1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6. 제58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②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자로 밝혀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특허법 개정안 해설]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을 규정한 **특허법 제58조의2 제1항에 새로운 호 신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재적 행정처분** 관련 규정임을 고려 시, **위헌 소지 최소화**를 위해 **개정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적절하다.

다만 **소급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칙에서 별도로 소급적용을 규정하는 입법을 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부칙개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신설된 결격사유를 등록취소 등 사유로 하여 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와 같은 규정체제는 방문판매법에서 발견된다. 방문판매법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등록취소사유로 한다. 제13조는 등록을, 제14조는 결격사유를, 제49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취소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결격사유의 하나로 징역형의 선고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들고 있다.

결격사유는 당해 법령이 아닌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는 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도정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노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법상으로는 구별되나 실무상으로는 양자의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아서 법안에서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한정하면서, 특허법 위반외의 다른 법령 위반을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삼는 경우를 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에 위임의 근거를 두어 이를 기초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다른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법령은 특허법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허법 신구조문대비표>

특허법	
-----	--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④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6. 12. 2.,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8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¹⁷⁾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¹⁸⁾
<신설>	제58조의3(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자로 밝혀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20.>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4. 20.>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	

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2021. 4. 20.>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 4. 20.>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해설]

시행령 제8조의5를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시행령 개정은 특허법 개정안에서 규정된 위임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률유보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특허법 위반외의 다른 법령 위반을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삼는 경우를 한정하지 않으면, 부당결부금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무런 법령이나 위반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범위만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는 법령만을 한정하여 법률에 위임의 근거를 두어 이를 기초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다른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법령은 특허법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그 대상법령을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권법과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을 열거함으로써 특허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업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업법들을 열거하였다.

<특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7) 결정사유를 두지 않는다면 방위사업법 제5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등록취소사유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하다고 본다.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원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참조.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9. 28., 2011. 2. 22., 2014. 12. 30., 2017. 1. 1 2017. 5. 29.>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조사·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

인력·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4(미생물 기탁·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신설>¹⁹⁾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 ② (생략) ③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상표법」 4. 「디자인보호법」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 「변호사법」 7. 「변리사법」

<특허법 시행규칙 신규조문대비표>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안 해설]

위의 법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등록취소 등을 취하는 제량의 근거가 되는 별표를 규정하면서,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제재의 정도를 달리함

19) 현행 시행령의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조문이동.

으로써 제량행위의 행사가 헌법상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단계를 나누어 규정하였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검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	

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6. 2>	<현행 유지하고 별표만 개정>

[현행 별표]

■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7. 6. 2>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1)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로서 인력의 수가 부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이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8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다. 영 제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3호				
1) 영 제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경우		등록 취소			
2) 영 제8조의4에 따라 등록한 미생물 기탁·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4회

가. ~ 라. (생 략)	(생 략)	(생 략)			
마.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바.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5호				
1) 전문기관의 대표가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2) 전문기관의 임원이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법 제58조의 2 제1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